

의과대학 교원인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과대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원의 자격·임용·경력산정 기타 인사에 관하여 의과대학 교원에게 적용할 교원인사규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구분) 의과대학 교원은 그 직무와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임교원 : 의과대학의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되어 교육부에 임용보고를 필한 교원으로 상근하는 근무지에 따라 기초의학교원, 부속병원 교원(삼성창원병원) 및 교육병원 교원(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으로 구분한다.
2. 임상교원 : 부속병원 또는 본교와 교육병원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교육병원”이라 한다)에 상근하는 의료직중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서 학생들의 임상실습·학생지도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
3. 연구교원 : 의과대학, 협력연구협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이하 “협력연구기관”이라 한다), 부속병원, 교육병원의 연구직중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서 주로 연구·학생의 실습 및 학생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
4. 외래교원 : 부속병원 또는 교육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학생들의 실습 및 지도를 위하여 외래교원으로 위촉된 교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과대학 전임교원에게 적용하며, 전임교원 외의 교원은 따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의과대학 인사평가위원회

제4조(설치) 의과대학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무부총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인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장,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교육부학장, 연구부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③ 위원 8인은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 부속병원장이 추천한 1인, 각 교육병원장이 추천한 2인, 의무부총장이 지명한 5인으로 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인사의 방침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정원관리·신규임용·재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교원 인사배치·교류 및 연수파견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밀유지)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중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임 용

제9조(교원의 자격) ① 교원은 별표 1의 교원자격기준에서 정하는 교육·연구경력과 연구실적등을 기본자격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5년이상 의학분야의 교육·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본교에서 인정하는 외국의 전문의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상의학분야 교원은 제1항의 기본자격 외에 전문의자격을 따로 가져야 한다.

제10조(경력연수 산정) 교원의 경력연수는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력은 통산사정경력에서 2년을 감하여 산정한다.

제11조(인사교류 및 파견) 학장은 필요에 따라 기관장의 동의를 거쳐 의과대학 관련기관 상호간순환배치·교류(파견·연구출장 포함)를 할 수 있다.

제12조(내신)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대한 내신은 해당교실 주임교수가 한다.

제13조(교실등의 교원정원) 교실 및 과별 교원정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주임교수) ① 기초의학교실 및 임상의학교실에 주임교수를 둔다.

② 주임교수는 부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③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양성교수요원) 기초의학 분야의 우수교수 양성을 위하여 양성교수요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양성교수요원의 임용·복무·처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신 분

제16조(당연퇴직) 전임교원 및 임상교원이 부속병원 또는 교육병원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교원의 신분을 당연 상실한 것으로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개정규정의 교원 신규임용 자격 기준은 2011년 3월 1일자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과대학 교원 자격기준

1. 교원 직급별 교육·연구경력

- 가. 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만 17.5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
- 나. 부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만 13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
- 다. 조교수 : 만 8년 또는 6.5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
- 라. (삭제)

2. 교원 신규임용 자격 기준

- 가. 의과대학 소속의 전임교원으로 신규임용 지원시 상근하는 근무지에 따라 자격기준을 별표 3과 같이 구분한다. 단, 삼성융합의과학원 근무 교원은 따로 정한다.
- 나. 연구실적 인정기간의 기준일자는 접수마감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다. 군복무 면제자 또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졸업동기생이 졸업후 군복무 의무연한에 있는 기간동안은 교원으로 신규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신규임명 예정자의 직급은 원칙적으로 교육·연구 경력을 기반으로 산정된 직급에 따라 부여한다.
- 마. 타대학 졸업자(4년제)의 신규 또는 승진임용시 의학계 학제 6년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추어 심의한다.

3. 교원 승진 자격기준 :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임교원임용심사내규」를 준용한다.

- 가. 박사학위 미소지자(외국 전문의 자격인정자 제외)는 부교수이상의 직급에 승진할 수 없다.
- 나. (삭제)
- 다. 연구실적으로 간주되는 논문종류는 원저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례보고 또는 종설도 예외적으로 연구 실적에 반영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 반영여부는 학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심의를 거쳐 평가한다.
- 라. 연구업적으로 인정된 증례보고, 종설등의 합계는 100%를 넘지 못한다.

(별표 2) 교육·연구경력 연수 환산표

경 력 종 별	환산율
기초의학 분야의 전문수련기관 근무경력	100%
대학부속병원 근무경력	100%
대학부속병원에 준하는 수련병원에 근무한 경력	100%
군의원 복무기관(최초 3년에 한함)	100%
Resident수련병원에 근무한 경력	80%
Intern수련병원에 근무한 경력	50%
Intern, Resident 경력	70%
병·의원 개업 또는 근무경력	50%
해외 수련병원에서의 Attending Dr.로 근무한 경력	80%
석사학위과정 이수경력 (2년)	70%
박사학위과정 이수경력 (3년)	70%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과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을 준용함.

(별표 3) 의과대학 교원 신규임용 자격 기준

구분	기초교원	부속병원	교육병원		비고
			삼성서울	강북삼성	
연구 실적	최근 3년 이내 발표한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 게재논문 3편이상	최근 3년이내 발표한 200% 이상의 연구실적(국제전문학 술지,국내전문학술지,박사학위논문			
필수 실적	-	-	국제전문학술지(SCI) 주저자 게재논문 3편 이상	① 국 제 전 문 학 술 지 (SCI) 주저자2편 또는 ② 국 제 전 문 학 술 지 (SCI) 주저자1편+ 박사학위논문 중 택1	